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

##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7. 23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7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7.16.

다. 상정일자: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7.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박창열】

#### 가. 제안이유

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·운영하여,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1) 목적 규정 개정(안 제1조)

조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4조제9항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개정

##### 2) 구성 규정 개정(안 제3조)

민간투자사업심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 근거 마련

##### 3)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~ 간사(안 제4조~제8조) 및 수당 등 (안 제11조) 삭제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·운영하여,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「서울시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2조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유사·중복된 위원회를 정리하여 구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로 합리적인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
- 기타 개정안은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삭제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